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8. 10.

발 의 자 : 구자근·박세채·이갑선
윤서규·한정우·허 복
김태근·우진석·김도문
김영호·석호진 (11인)

1. 제안 이유

-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사비 과다로 인한 경제성 저하와 신규 투자 수익 저하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값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대중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과의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로 하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범위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설치비 중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함(안 제5조)
-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 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사업자”라 함은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2.“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스관련 유관기관(담당부서장)
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3. 구미시의회 의원
4.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대표)
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경제통상국장 및 담당과장)
6. 위원회의 심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실무부서장인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⑧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추진방침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명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1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법 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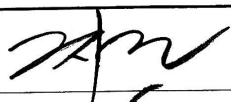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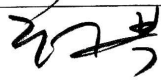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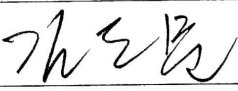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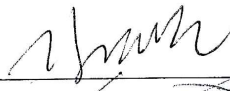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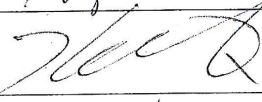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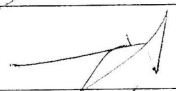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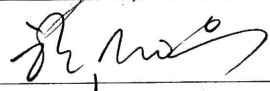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 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자원에 관한 조례(안) 서명

의원명	서명	날인
이재현		
박미혜		
이갑현		
유서균		
허복		
김도원		
이민재		
김영호		
이진석		
한정우		
이호진	